

##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본 부과 사전 안내

### □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본 부과 사전 안내

- 부 과 근 거 :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~ 제41조
- 부 과 대 상 :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㎡이상인 시설물
  - ※ 단, 공동시설물(집합건물)인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이 160㎡이상인 시설물
- 산 출 공 식 : 바닥면적(㎡) × 단위부담금 × 교통유발계수
  - ※ 단위부담금 : 350원(3,000㎡이하), 1,400원(30,000㎡이하), 2,000원(30,000㎡이상)
- 대 상 기 간 : 2025. 8. 1. ~ 2026. 7. 31.(부과기준일 : '26.7.31. 현재 소유자)
- 납 부 기 간 : 2026. 10. 16. ~ 10. 31.

### □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알림

- 조사기간 : 2026. 8. 3. ~ 2026. 9. 11.
- 조사방법 : 조사원 시설물 방문 조사(층별 사용용도, 주차면수, 소유자 등)

### □ 시설물 미사용신고 안내

-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미사용 신고서와 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▷ 증거자료는 미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.
    - 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(원본대조확인필, 부가세 신고 첨부서류임)
    - 임대차계약서, 휴·폐업사실증명원(세무서 발급)
    - 관리사무소 확인서(시설물 공실확인서) 및 관리비영수증(고지내역)
    - 전기요금고지서(한국전력), 상하수도사용증명서(수도사업소)

### □ 소유권 이전된 경우 일할계산신청 안내

- 부과기간 중 매매, 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
  -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며,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납부의무를 승계함.  
(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)

### □ 미사용신고 및 일할계산신청 등 서식 안내

- 부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bsjunggu.go.kr/>) 게재
- 교통행정과(600-4575)로 문의 요망

### □ 제출기한

- 일할계산신청서 및 미사용신고서 등 제출기한 : 2026. 8. 31.(월)까지
  - 제출방법 :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(silver1@korea.kr), 팩스(051-600-4559)
  - 주소 :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(우) 48926 중구청 교통행정과
  - ※ 이메일, 팩스 제출 시 송부 후 반드시 전화요망☎ 051-600-4575)